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나4978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나4978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1 선고 2020가소103216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

변론 종결 2020. 11. 17.

판결 선고 2020. 12. 15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1. 선고 2020가소10321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9,584,2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

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7. 10. 17.부터 2018. 8. 13.까지 피고에게 합계 29,584,201원을 지급하였다. 그중 ① 1,500만 원은 피고의 강요, 갈취, 편취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, ② 1,000만 원은 카드대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대여금이므로 그 변제를 구하며, ③ 나머지 돈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대납한 보험료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.

2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, 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의 지급을 강요하거나 공갈, 사기의 수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② 1,0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(오히려 정상적인 카드대금의 변제로 보인다), ③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,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노태현

판사김창현

판사김용한